청년13(일+삶)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 신청서

작성방법&유의사항

**1. 인적사항**

- 청년13(일+삶)통장 7기 가입자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전화번호(개인 핸드폰), 현거주지 주소 작성

**2. 계좌 및 적립**
- 총 정립 횟수 : 만기해지 시 **10회**로 작성,

: 기간은 7기 기준 → **2022년 2월 ~ 2022년 11월** 으로 작성

- 자부담 계좌번호 및 시지원금 계좌번호 : 배부식을 통해 수령 받은 2개 중
: 월 10만월씩 납입한 통장→ 자부담 계좌 / 100만원 입금된 통장 → 광주시 지원금 계좌.

※ 시 지원금 수령을 희망 할 경우‘희망합니다’체크 / 미희망 시 지원금은 미지급됨

**3. 총 지급신청액** : 만기 시 기준 총 지급 신청액은 **200**만원 (본인적립금 **100**만원/지원금 **100**만원)으로 표기
**단) 만기전 타지역으로 이전 시, 변동시점에 따라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음.**

**4. 적립금 반환계좌** : 만기금을 수령 받을 참여자 **본인 통장 계좌 번호 및 은행명** 작성
**단) 신청서 내용과 통장사본이 일치해야 함.**

**5. 해지종류 : 지급해지 체크, 만기해지 체크**

**5-1. 해지사유 :** →‘**만기해지**’작성

**6. 신정인 자필 날인(서명) 필수!**

**7. 유의사항**

|  |
| --- |
| ※ 신청자 본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, 해지 시 반드시 작성※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적립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.※ 기존 유사자산형성(희망키움통장Ⅰ/Ⅱ , 청년내일키움공제, 내일키움통장, 일하는 청년통장, 청년저축계좌)등 중복(가입자 및 수혜자)가입은 자격제외 대상임을 안내(공고문, 사업안내 및 약정서 등)드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중복수급 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‘광주광역시 지원금 및 이자’는 환수되며, 이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(약정서 제 3조 8항)※ 만기지급에 따른 사업 종료 이후에는 「청년13(일+삶)통장 사업」참여 이력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.(약정서 제 3조 7항)※ 유사자산형성 사업을 참여한 가입자 및 수혜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(062-227-7079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|

|  |
| --- |
| 청년13(일+삶)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 신청서 |
| **▪ 인적사항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성 명** |  | **성 별** |  |
| **생년월일** |  | **전화번호** |  |
| **현 거주 주소** |  |

**▪ 청년13(일+삶)통장 계좌 및 적립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총 정립 횟수** | 회 / (20 년 월 ~ 20 년 월)  |
| **자부담계좌번호** |  | **시지원금 계좌번호** |  |

※ 본인은 **시 지원금 수령 이후에는 향후 자산형성사업에 재 참여할 수 없음을 약정** **확인 및 서명하였으며**, 시 지원금 수령을(□ 희망합니다. / □ 희망하지 않습니다.)**▪ 총 지급신청액 : 총 만원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본인적립금** | 만원 | **광주광역시 지원금** | 만원 |
| **※ 광주광역시지원금 및 이자는 지원기준 및 약정이율에 따라 변경되므로, 담당자 확인 후 기입** |

**▪ 적립금 반환계좌 : ( 은행)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해지종류** | □ 지급해지 (□만기해지 □특별중도해지) / □ 중도해지  |
| **사 유** | ※ 만기 해지, 거주지 이전, 생계비 부족, 적금 유지 불가능, 타 자산형성사업신청 등 |
| **※ 적립금 반환계좌는 반드시 참여자 본인명의 통장(본인명의 통장 제출 불가시 담당자 문의)**  |

상기 본인은 **위와 같은** 사유로 청년13(일+삶)통장을 해지하고자 신청하니, 위의 계좌로 적립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2 년 월 일**신청인 : (인)****※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, 해지 시 반드시 작성**

|  |
| --- |
| \* 위 기재 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생 시 적립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.\* 유사자산형성(희망키움통장1,2/청년내일키움공제)등 중복 수급자는 공고문, 약정서 등에 의거 지원금 환수됩니다\* 만기지급에 따른 사업 종료 이후에는「청년13(일+삶)통장 사업」참여 이력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. |

**광주광역시장 /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귀하** |